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4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최유희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1. 제안이유

○ 2023. 3. 1.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 등으로 재정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유사·중복 조례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새로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교육 등 용어 정의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각급학교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지원 근거(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지정 및 모범학교 지원 근거 규정(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04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 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관련 법제는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2022년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거치며 양질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심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이슈에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20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등 환경교육 관련 법제의 변화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농촌유학 시행, 생태전환교육 연구학교 및 중점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주요 사업 현황¹⁾

(2023.6.12.일 기준)

추진 영역	주요사업 내용	운영현황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3교), 탄소중립 시범학교(36교) -학교자율사업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학교, 생태전환 교육 학급(동아리)활동,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원 연수(22회, 599명), 워크숍(1회), 체험마당(2과정, 286명) -교원학습공동체(30팀, 212명)
	생태전환교육 지원단 운영	-6개 영역(교육과정, 자원순환, 지역연계, 학생 365, 국제 공동수업, 농촌유학)(137명)
	생태전환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태전환교육 지도자료(학생 지도용 5종, 연수자료 2종) 및 교구(1종) 개발·보급, 생태환경영화 교육 프로그램(5편)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기후행동 365 네트워크 운영	-기후행동 실천 네트워크 '기후행동 365'(학생 3,553명/ 교사 1,132명/ 학부모·시민 518명) -학생 기후행동 365 운영위원회(22명)
	생태행동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전환	-기후위기 대응 행동 실천 캠페인 운영(2회, 12,506명 참여 중)
	농촌유학 운영	-1학기 235명(연장 124명)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1회), 모니터링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1회)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23~26) 수립

○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농촌유학 사업에 편중된 부적정한 운용으로 여러 차례 의회의 지적을 받았고,²⁾ 예산 삭감이 이뤄진 농촌유학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³⁾

1) 시의원(이승미 의원) 요구자료 제출(1344번)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8623, 2023.6.13.)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11.4.),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3.30.),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3)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2.21.),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 또한, 생태전환교육 조례 제6조는⁴⁾ 교육감이 생태전환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환경·생태교육자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⁵⁾ 조례에 대한 집행기관 중심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 더욱이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이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⁶⁾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⁷⁾ 등 환경교육 관련 조례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학교 환경교육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제기된 서울시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자치법규의 구성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학교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학교환경교육의 운영 지원과 학교 환경교육 모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조

회의(2023.3.30.) 등 참조.

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생태전환교육위원’은 ‘환경·생태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생태자문위원회’ 폐지 진행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예정)

6)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884호, 2021.3.25. 제정·시행)

7)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69호, 2020.7.16. 제정·시행)

에서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9조는 교원 연수,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포상과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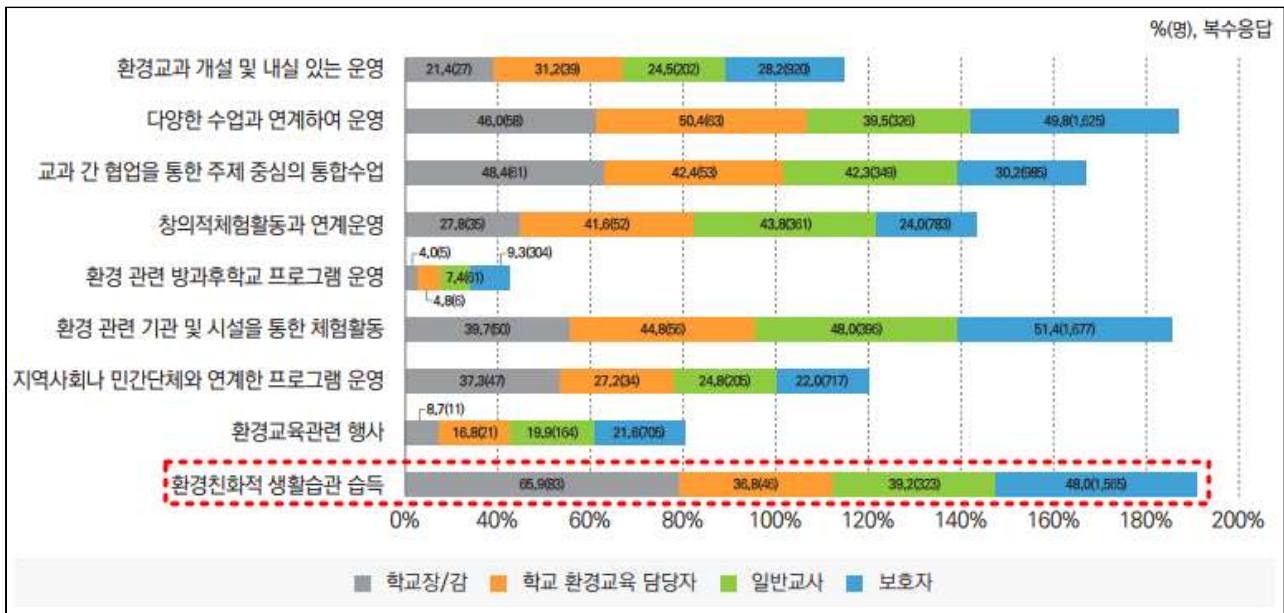
2)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에 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환경교육의 실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학교 환경교육의 실천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 등에게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태도와 행동을 촉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에⁸⁾⁹⁾ 따르면 학교 구성원이 인식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운영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습득’이 상당히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안 제6조는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8) 김현진 외(2023),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본조사」, 수탁연구보고 CRR 2023-03, 한국교육개발원.

9) 인용된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로, 전국 탄소중립 중점학교 및 탄소중립 시범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 12,593명과 조사 참여 학급의 담임교사 825명, 학부모 3,2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임.

[그림] 효과적인 학교 환경교육 운영 방법¹⁰⁾



○ 한편,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이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이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문은 조례 폐지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교원연수 등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원과 강사, 산학점임교사 등에게 연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한 연수나 교육활동의 지원 범위를 교원뿐만 아니라 강사나 산학점임교사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교원 외 인력의 교육활동

10) 김현진(2023.3.30.), “학교 구성원이 인식한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추진방향”, KEDI Brief 2023 vol.5, 한국개발연구원, 6쪽.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특히, 일반계고에 배치된 교사 중 환경 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31명인 상황에서¹¹⁾ 2022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치교사(相馳教師),¹²⁾ 강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동 규정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주체가 연수와 교육, 연구 활동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4) 집행기관 의견에 관한 검토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기제정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중복되고, 타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추이와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불일치하며,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정 취지에서 제시된 사항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¹³⁾
- 그러나 생태전환교육 조례와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¹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 조례 간 중복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 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이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로 제·개정되고 있는 추세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현재

1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일반고등학교 출신별 자격증·과목별 교원수, 329쪽.

12) 중등학교 단위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원을 의미함.

13)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참조.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 2023.5.30.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학교 환경교육 또는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 참조)

- 이와 함께 조례안이 「교육기본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또는 방향성과 불일치한다는 의견 역시 상위법령이 ‘학교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 주제는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규정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다소 타당성이 낮은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5) 경과조치에 관한 검토(안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는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생태전환교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생태전환교육계획을 안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보는 경과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과규정은 법질서 전환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 자치법규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 자치법규 적용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의미합니다.¹⁵⁾

법제처는 경과조치에 대해 “굳이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적용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확인적 차원에서도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며¹⁶⁾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상위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는바, 생태전환교육 조례 제5조에¹⁷⁾ 따라

15) 법제처(2022.8.),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13-314쪽.

16) 위의 책, 314쪽.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획 수립 전까지 기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한 취지가 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일반적 경과조치를¹⁸⁾ 둘 수 있음에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조례안의 당초 제안 취지를 희석할 수 있고, 조례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본계획에 있어서만 구 자치법규를 따르는 모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개념적으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집행기관의 입장은? (전병주 위원)

- 두 개념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생태전환교육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1.~8.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8) 자치법규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종전 법령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입법예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 사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자료: 법제처(2022.8.),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27쪽에서 발췌)

○ 일부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으로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적절한 근거를 갖고 추진된다고 생각하는지? (전병주 의원)

- 교육기본법과 국정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상 보았을 때 생태전환교육이 그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함.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보편적 의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제정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기금 운용 등의 문제는 조례 개정과 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교육보다 진보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전병주 의원)

○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지속가능사회 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충분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역시 모두가 공감할 것임. 다만,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유학에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더욱이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이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수 없음. (채수지 위원)

-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한 부분도 많지만, 생태전환교육은 국가·기업의 관계부터 사회 전반의 운영방식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개념이며, 서울시교육청도 비교적 최근 조례에 생태전환교육을 명시하였듯이 타 시도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교육을 이행해가고 있음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의 삭제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조명을 삭제하고자 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12명, 찬성 8명, 반대 4명).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04
----------	-----------

제안연월일 : 2023년 7월 3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부칙 제2조는 조례안의 당초 제안 취지를 희석할 수 있고, 조례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본계획에 있어 구 자치법규를 따르게 하는 모순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의 삭제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조명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의 조명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생태전환 교육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 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제 ></u></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 나.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및 명예교사

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교원 연수 등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

· 학교문화 조성 방안

5.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6.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7.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평가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설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대체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모범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